

보도시점 2025. 1. 19.(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1. 17.(금)

## 환경부,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 안전·편의 관리에 만전

- 무공해차 충전 편의 제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행위 및 선물 과대포장 특별 감시·단속 등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편의 제고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인 1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기 정상 작동 여부, △결제 기능 이상 유무,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 상태를 사전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 전기충전기: 1월 14일~2월 2일 / 수소충전소: 1월 6일~17일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 증가 및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운영 인력도 평시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휴게소 3곳\*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 익산휴게소(상행 2대), 처인휴게소(상행 5대, 하행 4대)

### ② 기차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마트와 같은 다중이

용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운수·유통업계 등 관계기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해 연휴 전 사업장, 터미널, 대중교통차량의 청소와 환기설비 점검,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등을 사전 조치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청소주기 단축, 환기시설 및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③ 탄소중립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그린카드×온누리’ 합동 판촉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1월 22일부터 2월 14일 까지 그린카드의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준다.

※ 행사기간 내 그린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며,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5,000점을 온누리상품권(10,000원)으로 교환(선착순 3,000명)

또한,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을 보내는 5가지 실천수칙은 △외출 전 콘센트 뽑기, △친환경 이동 실천하기, △성묘갈 때 다회용품 챙기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철·지역 재료로 만들기,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이다.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접수되는 민원 유형의 69%가 ‘뛰거나 걷는 소리’로 나타났다. 이에, 모두가 배려하는 층간소음 갈등 없는 설 연휴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홍보 포스터를 전국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홍보 영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송출할 계획이다.

\* △슬리퍼 착용, △매트 설치, △생활소음 4dB 낮추기 등

### ④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및 국립공원·친수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121개 주차장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주차장(9개소)을 제외한 112개 주차장이다.

아울러, 긴 연휴를 맞아 겨울 산행을 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탐방로 상습 결빙구간 신속 정비, △대피소 구호 물품 확충, △대설특보 시 탐방로 통제, △주요 탐방로 내 안전인력 증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한편, 설 연휴 기간동안 제방 위 친수시설(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중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1월 6일부터 약 2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에도 별도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비상 대기 및 필요시 현장 투입 등 자체 상황반을 구성·운영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 ❶포장 및 안전난간 등 파손 여부, ❷제방 침하 등 하천시설물 점검, ❸주변 하천공사 현장 확인(안전 등), ❹불법 점용 및 하천구역 내 금지 행위, ❺기타 안전 관련 사항 등 점검

## ㉕ 생활·음식폐기물 관리 및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 강화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을 감시(모니터링)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택가와 주요 밀집지역에 쓰레기가 적체·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수거일(연휴 기간 중 3~5일)을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연휴 기간에도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월 27일에 폐기물 특별 반입 허용 예정

이 밖에도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및 횡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과대포장 우려 제품 발견 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지자체)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횡수 위반 여부를 측정

## ⑥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 계도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주요 기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27,000여 곳에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을 사전 발송한다. 사업장 중점 점검사항 등을 협조문에 포함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특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고농도 폐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위반사업장, 주요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 공장 밀집지역 등의 사업장 총 3,800여 곳이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과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즉시 단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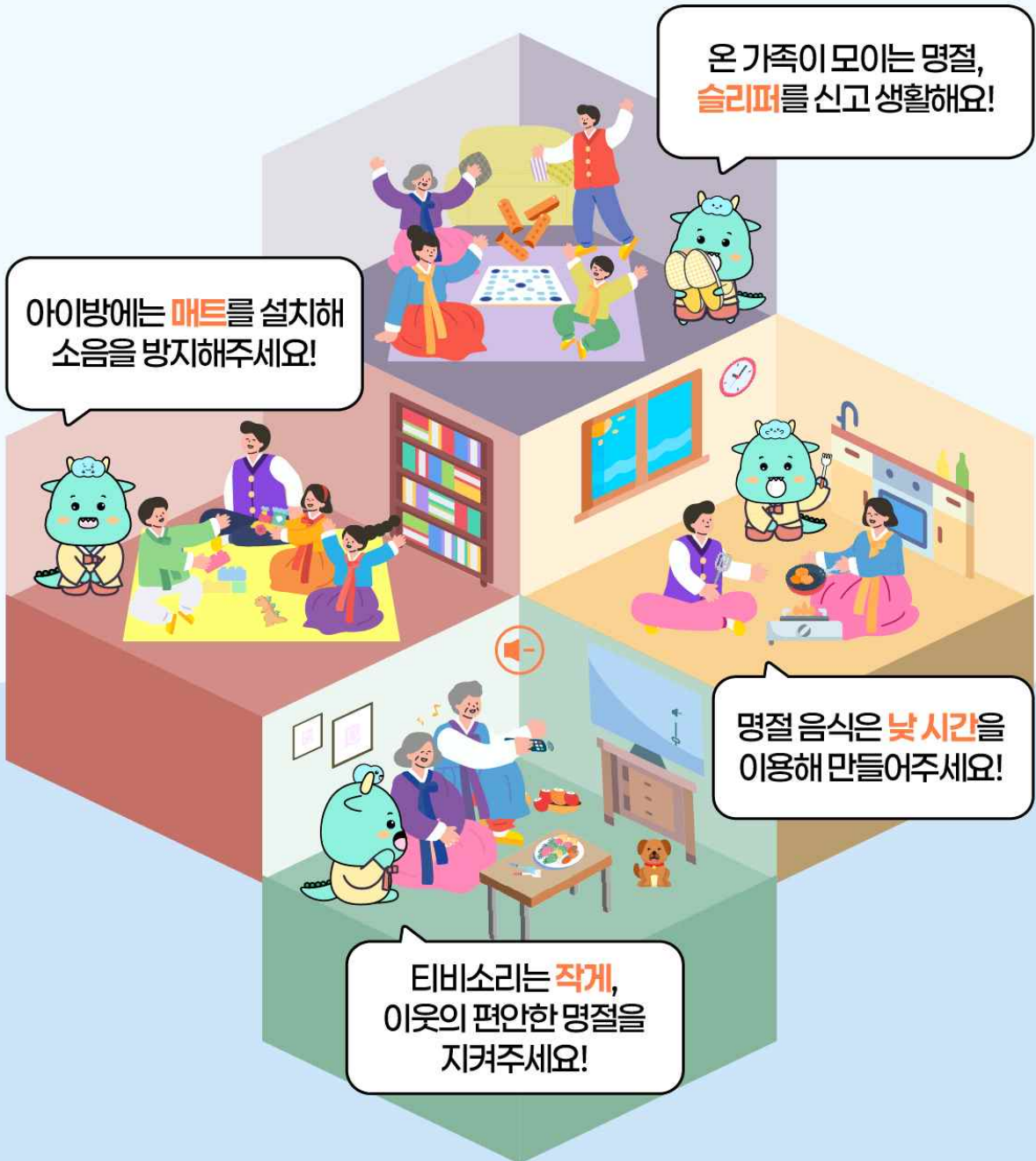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기관별·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며,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번 없이 전화 번호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이다.

연휴 이후인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자체 관리가 미흡하거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1. 설 명절 탄소중립 실천수칙  
 2. 설 명절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3.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4.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5. 환경신문고 홍보 포스터(국번 없이 128)  
 6. 환경오염행위 관련 예상 질의답변. 끝.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6040)
		담당자	서기관	이상일 (044-201-6041)





### 붙임 3

###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모형	명칭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종이 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종이로 배출
	스티로폼 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흘날리지 않도록 하여 재활용품으로 배출
	플라스틱 포장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비닐 봉투	비닐봉투와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여 재활용품으로 배출
	양파망	양파나 채소 등을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류로 배출
	과일 포장재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모형	명칭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남은 음식물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단, 과일씨, 조개, 게,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아이스팩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배출하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알루미늄 호일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 조각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비닐 랩	이물질 묻은 비닐랩 조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붙임 4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 단위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 (decoration cake)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나.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다.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마.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바.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사.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2.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환경신문고

## 환경오염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이리빨리 신고해주시면  
우리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 128



###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 입니다.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매연과다배출 등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등



**폐기물**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국번없이] 128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으로 신고 가능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신고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포상금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단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폐기물처리업자)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질, 농약, 분뇨, 가축분뇨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규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규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2. 환경오염행위 신고(☎128)가 접수되는 경우 처리 절차는?**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야간에는 해당 기관 상황실로 연결되어 접수·처리됨